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황 희 · 민홍철 · 김병주
박선원 · 추미애 · 부승찬
손명수 · 이용선 · 한민수
이소영 · 김종민 · 문진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,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,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.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.

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, 보육·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

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,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, 생활편의 증진, 보육·교육 지원,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·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신설).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인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
2.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·교육 지원
3. 군인가족의 지역적응 지원 및 군인가족 간 교류·협력 촉진
4.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8조(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군인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</u> <u>2.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 · 교육 지원</u> <u>3. 군인가족의 지역적응 지원 및 군인가족 간 교류 · 협력 촉진</u> <u>4.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</u> <p><u>③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